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병진 · 조계원
문대림 · 김주영 · 송옥주
박용갑 · 강득구 · 안도걸
임호선 · 안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·출산 환경을 제공하고,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,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아울러, “산부인과”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·분만·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.

이에 “산부인과”의 명칭을 “여성건강의학과”로 변경하고,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의 제목·제1항·제2항·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“산부인과”를 각각 “여성건강의학과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제24조제1호 중 “산부인과”를 “여성건강의학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3(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18조의3(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여성건강의학과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여성건강의학과----- ----- ----- -----.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	③ ----- ----- -----여성건강

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비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24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 또

의학과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여성건강의학과

제22조(비용 지원) ①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청문)

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<u>여성건강의학과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	--